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5402	제안연월일 : 2025. 12.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대안의 제안경위

순번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경과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179	오세희의원	2025.3.20.	제429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5. 9. 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회부
2		2210889	송재봉의원	2025.6.17.	제429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5. 9. 2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회부
3		2212354	정동만의원	2025.8.25.	제429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5. 11. 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회부
4		2214175	김남근의원	2025.11.12.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11.20.)
5		2210839	김종민의원	2025.6.13.	제429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5. 9. 2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회부

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5. 11. 20.)에서 위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11. 21.)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중소 벤처기업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기술을 주도하는 대기업이 수많은 중소기업, 스타트기업의 기술을 모아 기술집약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혁신을 이끄는 수평적 기술 네트워크 생태계가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여전히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재·부품·장비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이를 탈취·유용하여 제3자를 통해 저가로 납품하게 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음. 이러한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행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꺾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혁신 및 수평적 네트워킹 생태계 조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음.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기술 탈취·유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침해 사실 및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 대부분을 대기업이 보유하고 재판에 이를 현출하지 않음으로써, 피해 중소기업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패소하거나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함. 이처럼 기술탈취 소송 구조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작용하면서, 재판을 통한 진실 규명과 책임 추궁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21세기 첨단산업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기술탈취라는 전근대적
갑을관계 관행이 여전히 한국 산업 현장에서 지속되고 있음.

이에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가 사실조사
(Inspection)’ 및 ‘자료보전명령’ 제도와 미국 민사배심재판에서 시행하
고 있는 ‘당사자신문 제도’ 등 소위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 제
도를 도입하고,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의 자료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기울어진 운동
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은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
나, 이는 수탁·위탁거래 관계가 성립된 후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하여
만 적용되고 있어, 수탁·위탁거래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는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방지하거나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같이 수탁·위탁거래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법원이 영업비밀 등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6, 제40조의7, 제40조의8, 제40조의9 및 제40조의10 신설)

- 나. 법원으로부터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행정조사 기록 송부를 의무화 함(안 제40조제5항 신설 등)
- 다.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거나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원이 자료보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12 신설)
- 라.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관련 사실의 증명이나 손해액 관련 사실의 자료검증에 필요한 경우, 당사자가 직접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13 신설)
- 마. 계약 성립 이전 단계의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고 수탁기업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보호 범위를 수탁·위탁거래 계약 체결 이전 단계까지 확대(안 제25조제2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용행위”를 “유용행위(수탁·위탁 거래 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0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민사소송법」 제3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
2.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료

⑥ 법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자료가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원이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4항에 따라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요구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법원에 조사기록을 송부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법원의 요구에 따라 조사기록을 송부한 사실 및 송부한 조사기록의 목록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의5제3항 전단 중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에”를 “영업비밀에”로 한다.

제40조의6을 제40조의13으로 하고, 제40조의13(종전의 제40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을 “사람”으로 하며, “규정을”을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0조의6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4. 제40조의12제3항에 따라 진술인의 진술을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40조의6부터 제40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6(지정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① 법원은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다음 각 호에 모

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증거확보를 위하여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따라 조사할 증거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지정하고, 지정된 전문가(이하 “지정전문가”라 한다. 제40조의7에서 같다)로 하여금 다른 당사자(이하 이 조에서 “상대방 당사자”라 한다)의 사무실, 공장 및 그 밖에 상대방 당사자가 관리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상대방 당사자 및 그 직원 등에게 질문하거나 자료의 열람·복사, 장치의 작동·계측·실험 등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1. 상대방 당사자가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였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을 것
2. 상대방 당사자의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할 것
3. 당사자 중 일방이 다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을 지정전문가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법원조직법」 제54조의2·제54조의3에 따른 기술심리관이나 조사관
2.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또는 「특허법」 제154조의2에 따른 전문심리위원
3.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지정전문가에 의한 조사 결정에 앞서 변론 준비기일을 지정하여 신청한 당사자(이하 “신청당사자”라 한다) 및 상대방 당사자에게 기술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지정전문가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 164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지정전문가”로 본다.

⑤ 지정전문가는 법원이 지정한 기일 내에 조사결과를 기재한 보고서(이하 “조사결과보고서”라 한다)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전문가는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⑥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5항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우선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는 조사의 대상 ·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 및 본인 또는 제3자의 영업비밀에 관한 내용이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되었음을 이유로 그 내용의 삭제를 주장할 수 있다.

⑦ 법원은 제6항 후단에 따른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삭제한 후 다시 제출할 것을 지정전문가에게 명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된

영업비밀이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 당사자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절차를 거쳐 제출된 조사결과보고서의 열람·복사(이하 “열람등”이라 한다)를 할 사람(이하 “열람등대상자”라 한다)을 정하여 열람등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조사결과보고서에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등대상자를 지정할 때 신청당사자를 제외할 수 있다.
- ⑨ 제8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에 기재될 열람등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청당사자가 정한 자를 의미한다.

1. 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
2. 변리사, 회계사 등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이 선임하는 자로서 관련 내용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 ⑩ 제8항 단서에 따라 조사결과보고서의 열람등대상자가 지정된 경우 조사결과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당해 사건의 다른 소송기록의 일부이거나 첨부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당사자를 그 소송기록 중 해당 부분에 대한 열람등대상자를 지정할 때 제외할 수 있다.

- ⑪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상대방 당사자는 지정전문가가 요청

하는 자료(제40조의7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 및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법원이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자료는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하지 않는 등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신청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⑫ 제1항에 따른 상대방 당사자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⑬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대방 당사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당사자에게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신청당사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⑭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⑮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비용의 예납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16조를 준용한다.

⑯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절차·기간·비용, 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⑯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명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40조의7(조사대상 및 범위의 제한) ① 법원은 제40조의6제1항에 따른 조사를 결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법」 제26조의2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이하 “의사교환등”이라고 한다)를 그 조사의 범위 및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의 대상 및 범위에서 제외되는 의사교환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자료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목록에 해당하는 자료가 의사교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지정전문가는 제40조의6제1항에 따른 조사 중에 제3항에 따라 의사교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비공개 자료 이외에 상대방 당사자가 의사교환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에 대한 조사를 중지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그 자료의 목록을 제출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대방 당사자가 그 자료의 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정전문가는 그 사실을 제40조의6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목록에 기재된 자료가 의사교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의8(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당사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제40조제7항에 따라 영업비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40조·제40조의5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

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에 따른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당사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이 비밀유지명령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40조의9(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40조의8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을 말한다)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40조의10(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0조제5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의11(자료보전명령 및 효과) ① 법원은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가 제기되거나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점유·관리·보관하는 자에게 그 자료가 훼손되거나 사용될 수 없게 하지 아니하도록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자료보전명령의 대상이 될 자료를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2. 자료보전을 명하지 아니하면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자료를 점유·관리·보관하는 자
2. 증명할 사실
3. 보전하고자 하는 자료
4. 자료보전의 사유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을 하는 경우 자료를 점유·관리·보관하는 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점유·관리·보관하는 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을 신청한 당사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당사자”라 한다)에게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신청당사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⑤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자료보전명령의 대상이 된 자료를 점유·관리·보관하는 자가 제3자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의 보전에 필요한 비용을 신청당사자가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은 신청당사자가 제3자에게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신청당사자에게 자료보전명령에 관한 비용의 부담 및 자료보전명령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⑥ 자료를 점유·관리·보관하는 자가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 자료를 점유·관리·보관하는 자는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의 대상이 된 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고 있고 업무상 이유 등으로 그 자료를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에 따라 그 명령을 받은 때의 현상(現狀)대로 그 자료의 사본을 법원에 제출한 후 그 자료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본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⑧ 자료보전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⑨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신청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당사자에게 소제기를 증명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⑩ 신청당사자가 제9항에 따라 지정한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신청당사자에게 자료보전명령에 관한 비용의 부담 및 자료보전명령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⑪ 제10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⑫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에 관한 비용은 제1항에 따른 소에 관한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⑬ 제1항의 관할법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76조를 준용한다.

제40조의12(당사자에 의한 신문 등) ① 법원은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변호사가 선임된 양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양 당사자로 하여금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에 필요한 사람(당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상호간에 신문하게 할 수 있다.

1. 진술인의 수, 신문의 범위(의사교환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방법 · 장소 등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지 여부

2. 자료나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의 검증 또는 자료의 보전을 위해 서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신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고, 최초 변론기일 이전에 제1항에 따른 신문절차를 마치도록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양 당사자로 하여금 신문을 하게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진술인의 진술을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원서기관 · 법원사무관 ·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2. 「공증인법」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공증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에 따른 신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사람

④ 법원사무관등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0조를 준용한다.

⑤ 법원사무관등은 진술인에게 제1항에 따른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고, 선서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 후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3. 선서의 의무 및 취지
4. 다음 각 목에 대한 경고

가. 당사자가 진술인인 경우(법정대리인이 진술인인 경우를 포함)

- 한다. 이하 같다):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 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진술인인 경우: 위증의 벌
5. 그 밖에 법관이 제1항의 신문에 관하여 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⑥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른 신문이 완료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진술경과요약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3. 출석한 당사자·대리인·통역인과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성명
 4. 신문기일 및 장소
 5. 진술인의 인적사항
 6. 신문의 내용,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당사자의 이의 요지
 7. 진술거부 및 선서거부가 있었다면 그 내용 요지
 8. 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을 신문한 경우 그 요지
 9. 그 밖에 신문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⑦ 제1항에 따른 신문의 진행 중 신문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이의내용을 명확히 진술하는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그 이의요지를

진술경과요약서에 기재한 후 계속하여 신문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⑧ 양 당사자는 제3항에 따른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할 수 있고, 그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이에 대한 녹취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신문 내용 전체를 기록한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과 이에 대한 녹취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⑨ 당사자는 제3항에 따른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과 이에 대한 녹취서에 의사교환등에 관한 진술이 포함되었음을 이유로 그 내용의 삭제를 주장할 수 있다.

⑩ 법원은 제9항에 따른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제3항에 따른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과 이에 대한 녹취서에서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⑪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등 제1항에 따른 신문절차를 방해하는 때에는 법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1. 진술인이 진술할 내용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2. 진술인이 진술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진술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소명되는 경우 증명할 사실에 관한 상대

방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⑫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을 제1항에 따라 신문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03조부터 제309조까지, 제311조, 제314조, 제315조, 제321조부터 제324조까지, 제327조제1항, 제327조의2 및 제328조를, 당사자인 진술인을 제1항에 따라 신문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09조, 제321조, 제322조, 제327조제1항, 제327조의2 및 제370조를 준용한다.

⑬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이 진술거부 또는 선서거부를 하는 경우 거부하는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⑭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신문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40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을 위반하여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그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제40조의6제5항 후단 또는 제40조의10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2.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법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

⑥ 이 법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 아닌 진술인이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43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정당한 이유 없이 제40조의6제11항 전단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법인의 경우: 1억원 이하

2. 법인의 임원·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5천만원 이하

⑦ 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40조의6 및 제40조의7, 제40조의11부터 제40조의13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가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료

2.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료

⑥ 법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자료가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원이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4항에 따라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요구의 목적 내에서 열람 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

<신 설>

<신 설>

<신 설>

항에 따라 법원에 조사기록을
송부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
게 법원의 요구에 따라 조사기
록을 송부한 사실 및 송부한
조사기록의 목록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의5(자료제출명령)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에 해당하더라도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자료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 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 ⑧ (생략)
<신설>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40조의6(지정전문가에 의한 사
실조사) ① 법원은 제25조제2

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증거확보를 위하여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따라 조사할 증거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지정하고, 지정된 전문가(이하 “지정전문가”라 한다. 제40조의7에서 같다.)로 하여금 다른 당사자(이하 이 조에서 “상대방 당사자”라 한다)의 사무실, 공장 및 그 밖에 상대방 당사자가 관리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상대방 당사자 및 그 직원 등에게 질문하거나 자료의 열람·복사, 장치의 작동·계측·실험 등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1. 상대방 당사자가 제25조제2

항을 위반하였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을 것

2. 상대방 당사자의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할 것

3. 당사자 중 일방이 다른 수단

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을 지정전문가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법원조직법」 제54조의2 ·
제54조의3에 따른 기술심리
관이나 조사관

2.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또는 「특허법」 제154조의2
에 따른 전문심리위원

3.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
하는 사람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전문가에 의한 조사 결정에 앞
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여
신청한 당사자(이하 “신청당사
자”라 한다) 및 상대방 당사자
에게 기술설명 또는 의견을 진

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전문가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법」 제164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지
정전문가”로 본다.

⑤ 지정전문가는 법원이 지정
한 기일 내에 조사결과를 기재
한 보고서(이하 “조사결과보고
서”라 한다)를 법원에 제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전문가
는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
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⑥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
5항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우선
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
자는 조사의 대상 · 범위에 해
당하지 않는 자료 및 본인 또
는 제3자의 영업비밀에 관한
내용이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
되었음을 이유로 그 내용의 삭
제를 주장할 수 있다.

⑦ 법원은 제6항 후단에 따른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조
사결과보고서에서 삭제한 후
다시 제출할 것을 지정전문가
에게 명하여야 한다. 다만, 조
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된 영업비
밀이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
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⑧ 당사자 또는 그의 소송대리
인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절차를 거쳐 제출된 조사결과
보고서의 열람·복사(이하 “열
람등”이라 한다)를 할 사람(이
하 “열람등대상자”라 한다)을
정하여 열람등을 신청할 수 있
다. 다만, 법원은 조사결과보고
서에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
자 또는 제3자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
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보고서의 전
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등
대상자를 지정할 때 신청당사
자를 제외할 수 있다.

⑨ 제8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에 기재될 열람등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청당사자가 정한 자를 의미한다.

1. 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
2. 변리사, 회계사 등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이 선임하는 자로서 관련 내용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⑩ 제8항 단서에 따라 조사결과보고서의 열람등대상자가 지정된 경우 조사결과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당해 사건의 다른 소송기록의 일부이거나 첨부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당사자를 그 소송기록 중 해당 부분에 대한 열람등대상자를 지정할 때 제외할 수 있다.

⑪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상대방 당사자는 지정 전문가가 요청하는 자료(제40조의7제1항

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 및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법원이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자료는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하지 않는 등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신청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⑫ 제1항에 따른 상대방 당사자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⑬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대방 당사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당사자에게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신청당사자가 이

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⑯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⑯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비용의 예납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16조를 준용한다.

⑯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 절차 · 기간 · 비용, 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⑯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명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0조의7(조사대상 및 범위의 제한) ① 법원은 제40조의6제1항에 따른 조사를 결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법」 제26조의2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

<신 설>

(이하 “의사교환등”이라고 한다)를 그 조사의 범위 및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의 대상 및 범위에서 제외되는 의사교환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자료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목록에 해당하는 자료가 의사교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지정전문가는 제40조의6제1항에 따른 조사 중에 제3항에 따라 의사교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비공개 자료 이외에 상대방 당사자가 의사교환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에 대한 조사를 중지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그 자료의 목록

을 제출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대방 당사자가 그 자료의 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정전문가는 그 사실을 제40조의6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목록에 기재된 자료가 의사교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40조의8(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당사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제40조제7항에 따라 영업비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다

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40조·제40조의5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에 따른 영업비밀이 해
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
요가 있다는 것

② 당사자 또는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
(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
다)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
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
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
하는 사실

③ 법원이 비밀유지명령을 결
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
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
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

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
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
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40조의9(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
는 제40조의8제1항에 따른 요
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
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
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을 말한다)에 비밀유지명
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
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
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야 한다.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 항
고를 할 수 있다.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신 설>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 설>

제40조의10(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0조제5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40조의11(자료보전명령 및 효과) ① 법원은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소가 제기되거나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의 신청에 따라 위반행위의 존
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점유 ·
관리 · 보관하는 자에게 그 자
료가 훼손되거나 사용될 수 없
게 하지 아니하도록 1년의 범
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
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1
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자료보전명령의 대상이 될
자료를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2. 자료보전을 명하지 아니하면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는 사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자
료보전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
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자료를 점유 · 관리 · 보관하
는 자
2. 증명할 사실

3. 보전하고자 하는 자료

4. 자료보전의 사유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보전명령을 하는 경우 자료를
점유·관리·보관하는 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보전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점유·관리·보관하는 자의 피
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을
신청한 당사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당사자”라 한다)에게 담보
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
여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당사자가 이에 따르지 아
니하는 때에는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에 관하
여는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⑤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신청
된 자료보전명령의 대상이 된
자료를 점유·관리·보관하는
자가 제3자인 경우 제1항에 따

른 자료의 보전에 필요한 비용을 신청당사자가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은 신청당사자가 제3자에게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신청당사자에게 자료보전명령에 관한 비용의 부담 및 자료보전명령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⑥ 자료를 점유·관리·보관하는 자가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 자료를 점유·관리·보관하는 자는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의 대상이 된 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고 있고 업무상 이유 등으로 그 자료를 생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에 따라 그 명령을 받은 때의 현상(現狀)대로 그 자료의 사본을 법원에 제출한 후 그

자료를 개신할 수 있다. 이 경
우 사본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⑧ 자료보전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⑨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보전명령이 있은 후 7일 이내
에 신청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
여 신청당사자에게 소제기를
증명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⑩ 신청당사자가 제9항에 따라
지정한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
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
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
에 따른 결정으로 신청당사자
에게 자료보전명령에 관한 비
용의 부담 및 자료보전명령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⑪ 제10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⑫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
에 관한 비용은 제1항에 따른

<신 설>

소에 관한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⑬ 제1항의 관할법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76조를 준용한다.

제40조의12(당사자에 의한 신문 등) ① 법원은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변호사가 선임된 양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양 당사자로 하여금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에 필요한 사람(당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상호간에 신문하게 할 수 있다.

1. 진술인의 수, 신문의 범위 (의사교환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방법 · 장소 등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지 여부

2. 자료나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의 검증 또는 자료의 보

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인
지 여부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신문
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변론
준비기일을 지정하고, 최초 변
론기일 이전에 제1항에 따른
신문절차를 마치도록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양 당
사자로 하여금 신문을 하게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
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
에게 진술인의 진술을 녹음장
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
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하
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원서기관 · 법원사무관 · 법
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2. 「공증인법」 제1조의2제1호
에 따른 공증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에 따른 신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사람

④ 법원사무관등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0조를 준용 한다.

⑤ 법원사무관등은 진술인에게 제1항에 따른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고, 선서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 후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3. 선서의 의무 및 취지

4. 다음 각 목에 대한 경고

가. 당사자가 진술인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진술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진술인인 경우: 위증의 벌

5. 그 밖에 법관이 제1항의 신문에 관하여 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⑥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른 신문이 완료된 후 지체 없

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한 서면(이하 “진술경과요약서”
라 한다)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3. 출석한 당사자·대리인·통
역인과 출석하지 아니한 당
사자의 성명
4. 신문기일 및 장소
5. 진술인의 인적사항
6. 신문의 내용, 방법 및 절차
에 관한 당사자의 이의 요지
7. 진술거부 및 선서거부가 있
었다면 그 내용 요지
8. 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당
사자가 아닌 진술인을 신문
한 경우 그 요지
9. 그 밖에 신문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
항

⑦ 제1항에 따른 신문의 진행
중 신문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
자는 이의내용을 명확히 진술
하는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
은 그 이의요지를 진술경과요
약서에 기재한 후 계속하여 신
문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⑧ 양 당사자는 제3항에 따른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에 대
하여 열람·복사를 할 수 있고,
그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이에 대한
녹취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
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신문 내용 전체를 기록한 녹음
물 또는 영상녹화물과 이에 대
한 녹취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⑨ 당사자는 제3항에 따른 녹
음물 또는 영상녹화물과 이에
대한 녹취서에 의사교환등에
관한 진술이 포함되었음을 이
유로 그 내용의 삭제를 주장할
수 있다.

⑩ 법원은 제9항에 따른 주장
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제3항
에 따른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
물과 이에 대한 녹취서에서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⑪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등 제1항에 따른 신문절차를 방해하는 때에는 법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1. 진술인이 진술할 내용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2. 진술인이 진술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진술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소명되는 경우 증명할 사실에 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⑫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을 제1항에 따라 신문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03조부터 제309조까지, 제311조, 제314조, 제315조, 제3

제40조의6(별 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 2. (생략)
<신설>

21조부터 제324조까지, 제327조 제1항, 제327조의2 및 제328조를, 당사자인 진술인을 제1항에 따라 신문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09조, 제321조, 제322조, 제327조제1항, 제327조의2 및 제370조를 준용한다.

⑬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이 진술거부 또는 선서거부를 하는 경우 거부하는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⑭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신문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의13(별 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제) -----
-----사람-----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을-----
-----.

1. · 2. (현행과 같음)
3. 제40조의6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신 설>

제41조(별 칙) ① ~ ③ (생 약)

<신 설>

<신 설>

4. 제40조의12제3항에 따라 진

술인의 진술을 녹음 또는 영
상녹화 하는 사람 중 공무원
이 아닌 사람

제41조(별 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40조의11제1항에 따른 자
료보전명령을 위반하여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그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
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제40조의6제5항 후단 또는
제40조의10을 위반하여 비밀
을 누설한 자

2.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법원
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 ·
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

<신 설>

제43조(과태료) ① ~ ④ (생략)

<신 설>

⑤ (생략)

<신 설>

⑥ 이 법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 아닌 진술인이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43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정당한 이유 없이 제40조의 6제11항 전단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법인의 경우: 1억원 이하
2. 법인의 임원·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5천만원 이하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이 부과·징수한다.